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선박직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기사 양성 경로를 다변화하여 안정적 해기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군교육사령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한 실습기간, 교육이수 시간 등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의조종장비 실습기간 승무경력 인정(안 제16조제2항)

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한 실습은 학습효과가 뛰어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승선실습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

나. 해기사 양성기관 확대(안 제16조제7항·제8항)

해군교육사령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해기사 양성 기관을 다변화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운영.

다. 교육훈련기간 승무경력 인정(안 제16조의3)

면허취득교육, 해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무경력으로 인정.

라.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 개선(안 제20조제4호)

해기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승무경력에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

마. 개인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24조의2)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기사 시험 관리,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추가.

바. 항해사 승무경력 규정 정비(안 별표 1의3)

항해사 면허취득 요건 중 “4급 이하 항해사의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받으려는 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 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선과 계류된 선박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선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주기관 추진력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어선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또는 주기관 추진력 500킬로와트 이상의 어선”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간의 범위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가 소정의”를 “사람이 정

해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내에서”를 “에서”로,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의2에 따른”으로, “적정하다고”를 “적절하다고”로, “자”를 “사람”으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2월 이내의 기간

제16조제6항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적정하다고”를 “적절하다고”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를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로 한다.

⑦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등 이수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기간을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다만, 승선 중 통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기간은 승무한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
2.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제20조제4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제24조의2제1호 중 “해기사”를 “해기사 시험 관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본문 중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를 “상선면허”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제1호 중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을 “전파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비고 제2호

가목 중 “24월”을 “24개월”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4월”을 “24개월”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별표 1의3 제5호 비고 제2호다목 중 “12월”을 “12개월”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2월”을 “12개월”로,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를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로,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를 “6개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선박“이란 <u>부선과 계 류된 선박중 총톤수 500톤 미만 의 선박</u> 을 말한다. <u><신 설></u>	제3조(선박의 범위) ----- ----- ----- ----- <u>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1. <u>부선</u> 2. <u>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u>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 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 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 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 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나. (생 략) 다. 6급의 기관사면허(<u>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1 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으로 취득하는 면허</u> 로 한	제4조(한정면허) ① ----- ----- ----- -----. 1.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주기관 추진력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어선 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u>

정한다) 2. ~ 6.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 <u>지정 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u> 1. · 2. (생 략) 3. 별표1의3의 규정에 <u>의한</u>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u>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u>에는 그 교육기간 4. <u>선박모의조종장비 · 선박기관 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u>	<u>무경력 또는 주기관 추진력 500킬로와트 이상의 어선---</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 <u>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간의 범위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포함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 <u>따른</u> ----- ----- <u>사람이 정해진</u> ----- ----- <삭 제>
---	--

모의조종장비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1회에 한하여 2월(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 승무경력보다 긴 경우에 한정한다)

②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중 실습을 한 경우에 별표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습기간을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1. 2. (생략)

<신설>

③ (생략)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② -----

-- 따른 -----
----- 에서 -----

----- 포함한
다.

1. 2. (현행과 같음)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2월 이내의 기간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6조의2에 따른 -----
적절하다고 -----

----- 사람-----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 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신설>

----- 사람에 대해서-----

⑤ (현행과 같음)

⑥ -----
해양경찰교육원-----

사람은 -----

⑦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평생교육시설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적

절하다고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등 이수
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
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기간을 선박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
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가. ~ 라. (생략)

<신설>

마. · 바. (생략)

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
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
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포함
한다. 다만, 승선 중 통신, 인터
넷 등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해
당 교육기간은 승무한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
허취득교육

2.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제20조(면허의 갱신)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바. · 사. (현행 마목 및 바목
과 같음)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 함된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u>해기사</u> 면허 에 관한 사무 2. (생략) <u><신설></u>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1. ----- <u>해기사 시험</u> <u>관리 및</u>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법 제</u> <u>16조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u> <u>련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741